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가단55092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성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호원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하

담당변호사 이주열

변론 종결 2024. 9. 10.

판결 선고 2024. 10. 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22. 8. 19.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22. 8. 24. 접수 제69743호로써 신탁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김포시 D, E 소재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 9. 채무자 회사에 2억 원을 변제기 2022. 6.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지체 시 이 사건 집합 건물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채무자 회사는 2022. 8. 1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소유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F조합, G조합, H조합, I조합을 우선수익자(이하, '이 사건 우선수익자'라고 한다)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집합건물은 채무자 회사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라. 원고는 위 이전등기 사실을 알게 된 후 2022. 10. 8. 채무자 회사로부터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후순의 채권자로 등재시켜주고 2022. 10. 31.까지 위 대여금을 전액 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적어도 2022. 10. 8. 채무자 회사가 그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2022. 10. 8. 채무자 회사의 부동산 처분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채무자 회사가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 회사는 무자력 상태에서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신탁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선의인 경우 사해신탁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신탁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다286697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 J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우선수익자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채무자 회사와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공시되지 않는 채무자

회사의 일반 채권채무관계까지 파악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만일 이 사건 우선수익자들이 원고 등 채무자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사해행위취소의 위험을 무릅쓰고 채무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해 줄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우선수익자들로부터 대출받은 99억 원 대부분을 이 사건 신탁계약 전 부담하고 있던 근저당권부 채무(8,167,747,978원) 및 공사대금 채무(14억 3,000만 원)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 이 사건 신탁계약일을 기준으로 채무자 회사의 체납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2024. 6. 10. 기준으로 이 사건 우선수익자에 대한 연체 내역 외에 다른 연체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우선수익자들은 채무자 회사에 99억 원을 대출하면서 외부 감정기관을 통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감정평가절차(평가액은 15,638,000,000원)를 거치는 등 여신심사를 거쳤는데 그 대출과정이나 내용에 있어 특별히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우선수익자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우선수익자가 선의인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전연숙

별지